

여러분, 시험 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험 혹시 원하는 결과 얻지 못하셨더라도
다음 시험을 잘 보기 위한 좋은 연습을 했다고 생각하고 계속 정진하셔서
이후 시험에서 꼭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총평

“생소한 지문 있었지만 합격노트로 만점 가능”

이번 국가직 9급은 생소한 지문이 섞여 있고 사례형도 출제되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다.
그러나 합격노트만으로, 전체 20문제 중 20문제가 모두 커버되었으므로
합격노트만 충실히 소화해도 100점이 가능한 시험이었다. (이번 시험은 22년 간행 최신판례가 출
제되지 않아서, 3월에 진행한 최판특강 프린트를 못 보고 합격노트만 본 경우조차도 만점이 가능
했다)

(지문단위로는, 합격노트만으로 전체 80개 지문 중 75개 지문이 커버되었다. 커버 안 된 지문은 6
번 2지문, 7번 2지문, 12번 1지문, 16번 3지문, 20번 1지문인데, 이 지문들을 모르더라도, 나머
지 지문들을 가지고 정답을 찾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본 해설지에서는 복습의 편의를 위해 가급적 합격노트를 그대로 원용하면서, 해당면수를 표기해
적중자료를 곁하도록 하였다.

1. 「행정기본법」상 기간의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 ②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 ③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한다.
- ④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을 계산할 때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다만, 그러한 기준을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

①O 합격노트 62면

B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①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을 준용한다.

②O ③X 합격노트 41면

행정기본법 제7조(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산) 법령등(훈령·예규·고시·지침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행일을 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을 시행일로 한다.
2.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법령등을 공포한 날을 첫날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법령등을 공포한 날부터 일정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경우 그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④O 합격노트 62면

행정기본법 제6조(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 ② 법령등 또는 처분에서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권익이 제한되거나 의무가 지속되는 기간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는 것이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는 기간의 첫날을 산입한다.
2.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도 기간은 그 날로 만료한다.

답 ③

2. 행정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근거규정 등을 명시하여 신청하는 인·허가 등을 거부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 당사자가 그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③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군인사법령에 의하여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 대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진급선발취소처분을 한 것이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④ 과세의 절차 내지 형식에 위법이 있어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는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거기에 적시된 절차 내지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하여 미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은 그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다시 새로운 과세처분을 할 수 있다.

중

①O 합격노트 199면

S 행정절차법 제30조【청문의 공개】 청문은 당사자가 공개를 신청하거나 청문 주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O 합격노트 206면 15번 판례

판례
S [조항까지X] [1] 당사자가 근거규정을 명시해 신청하는 인·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에 있어 당사자가 근거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이유를 제시한 경우 처분의 근거 및 이유를 구체적 조항 및 내용까지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처분이 위법하지 않음
 [2] 토지형질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하는 근거규정으로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를 명시하지 않고 '도시계획법'이라고만 기재했으나, 신청인이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불허된 것임을 알 수 있었던 경우, 불허처분은 위법 아님(2000두8912)

③X 합격노트 204면 4번 판례

판례
S [진급예정자] 군인사법령에 의해 진급예정자명단에 포함된 자에게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진급선발 취소 처분을 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2006두20631).

④O 합격노트 441면 6번 판례

판례
S [사유달라? 기속력 안미쳐] 과세처분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세율, 세액산출근거가 누락되어 절차, 형식의 위법을 이유로 과세처분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확정판결에 적시된 절차, 형식의 위법사유에 한해 미침 / 확정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 행한 새로운 과세처분은 확정판결로 취소된 종전 과세처분과 별개의 처분으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 안됨(85누231)

답 ③

3.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작용도 포함된다.
- ② 청구기간 내에 헌법소원이 적법하게 제기되었음에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청구기간을 오인하여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 내지 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 ③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인 원고가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는 「군인연금법」 소정의 사망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원고가 받은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을 공제할 수 없다.
- ④ 외국인이 피해자인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이 없더라도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

중

①X 합격노트 308면 1번 판례

판례
S [사경제X] [1] 국가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
 [외형설] [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란 직접 공무원의 직무집행행위이거나 그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행위를 포함하고, 외관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공무원의 직무행위로 보이면 비록 실질적으로 직무행위에 속하지 않더라도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한 것으로 보아야(98다39060)

②O 합격노트 309면 8번 판례

판례

S [불복절차 없으면] [1]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시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 불복에 의한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것 자체가 법관이나 다른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인 등 시정을 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스스로 시정을 구하지 않아 권리를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국가배상 받을 수 없음

[2] 재판에 대해 불복절차·시정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부당한 재판으로 불이익·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배상 청구 가능

[현재재판관 실수] [3] 현재 재판관이 청구기간 내에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청구기간을 오인해 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절차·시정절차가 없는 때에는 국가배상책임(위법성) 인정됨

[4] 설령 본안판단을 해도 어차피 청구가 기각되었을 것이라도, 현재 재판관이 일자계산을 정확히 하여 본안판단을 할 것이라는 헌법소원 청구인의 기대는 인격적 이익으로서 보호가치가 있어, 그 침해로 인한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의무가 있음

[5]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사실심 법원이 재판사정을 참작해 재량으로 확정(99다24218)

③X 합격노트 329면 17번 비교판례

판례

B 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와의 조정에 관한 조항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과 달리, 군인연금법 제41조 제1항은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자체 부담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와 같은 종류의 급여를 받은 사람에게는 그 급여 상당액에 대해 이 법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 /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 ⇨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 등의 유족이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손해배상금 상당 금액에 대하여는 군인연금법상 사망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2018두36691)

구 군인연금법상 급여 중 사망보상금은 일실손해 보전을 위한 것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소극적 손해배상과 같은 종류의 급여이므로,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의 유족이 국가배상을 받은 경우 국가보훈처장 등은 사망보상금에서 소극적 손해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수 있을 뿐, 이를 넘어 정신적 손해배상금까지 공제할 수 없음(2019두45944)

④X 합격노트 304면

국가배상법

가) 지위, 성격 및 적용순서

- 국가배상법은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법
- 판례 : 국가배상법은 사법(私法)으로서 민법의 특별법이고, 민사소송에 의함 / 국가배상은 사법상 불법행위의 특수한 유형에 불과 **S**
- 외국인이 피해자 : 그 국가와 상호보증에 있어야 적용 **B**

답 ②

4. 정보공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 ②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가 공공기관에 대해 정보의 사본 또는 출력물의 교부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개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다.
- ③ '2002학년도부터 2005학년도까지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그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 ④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중

①O **합격노트 219면 9번 판례**

판례
A [학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에 해당(2010두2913)

②O ④O **합격노트 218면 위 5번 판례**

판례
 5. **S [거부당한 자체가]**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여기서 국민은 자연인,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의 경우 **설립 목적을 불문**
 [2]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 권리 ⇒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처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 침해**
 [3] 사본 또는 출력물 교부의 방법으로 공개방법을 선택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사본·복제물 교부를 제한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공개방법에 따라야 하므로 **공개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음**
 [4]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현 제9조 제1항 제6호 마목] 해당 여부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사생활 보호 등 이익과 공개로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등 공익을 **비교교량해** 개별 판단
 [5]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없이** 개인자격으로 간담회·연찬회에 참석하고 **금품을 수령한** 정보는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해 필요한 정보**’가 아님(2003두8050)

③X **합격노트 219면 17번 판례**

판례
B [1]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자료는 학교식별정보도 포함하니,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현저히 지장 받을 것이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음
 [2] 수능시험 원데이터는 연구목적으로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비공개대상 아님(2007두9877).

답 ③

5.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제기되어 재심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는 행정청은 스스로 대상 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 ② 행정청은 사정변경으로 적법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 ③ 제소기간의 경과 등으로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다 하여도 행정청은 실권의 법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 ④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

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중

①X **합격노트 64면 3번 판례**

판례
S [소송중이라도]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부과권자는 위법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하자를 보완해 다시 부과처분 가능 ⇨ 권리행사에 법률상 장애사유가 없으므로 부과권의 소멸시효 진행(2003두5686)

②O **합격노트 170면**

행정기본법 제19조(적법한 처분의 철회) **B** ① 행정청은 적법한 처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래를 향하여 철회할 수 있다.
1. 법률에서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법령등의 변경이나 사정변경으로 처분을 더 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중대한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③O **합격노트 149면**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2) 내용 **B**

-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이 더 이상 다투지 못하는 힘 / 처분청이 취소, 철회하는 것은 가능 / 행정상 손해배상청구 가능

④O **합격노트 167면**

행정기본법 제18조(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B** ① 행정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전부나 일부를 소급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래를 향하여 취소할 수 있다.

답 ①

6. 과징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소정의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부당지원행위의 역지라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한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되어 있으므로 국가형벌권 행사로서의 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② 행정기본법령에 따르면, 과징금 납부 의무자가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해당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 ③ 관할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가지 위반행위를 인지하였다면 전부에 대하여 일괄하여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인지한 위반행위 중 일부에 대해서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
- ④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부과·징수 주체, 부과 사유, 상한액,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

려는 경우 그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상

①O 합격노트 294면 4번 판례

판례

S [형벌 &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출액의 2%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이중처벌금지, 적법절차,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과징금은 위반행위에 제재를 가하는 행정상 제재금의 기본적 성격에 부당이득환수적 요소도 부가된 것이고, '처벌'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이 형사처벌과 과징금의 병과를 예정하고 있어도 이중처벌금지 위반 아님(2001헌가25)

②X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7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징금 납부 의무자는 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기나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문서에 같은 조 각 호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해야 한다.

③O 합격노트 293면 2번 판례 [1]

판례

N [1]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여러 위반행위에 사업정지처분을 택한 이상 위반행위의 종류·위반정도를 불문하고 사업정지 기간은 6개월 초과 못함 ⇨ 사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택한 경우도 사업정지와 마찬가지로 여러 위반행위에 대해 1회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총액의 최고한도액은 5,000만 원 ⇨ 행정청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여러 위반행위를 인지했다면 전부에 대해 일괄해 5,000만 원의 최고한도 내에서 하나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함이 원칙이고, 인지한 여러 위반행위 중 일부에만 우선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별도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불허. (허용하면 여러 위반행위에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 최고한도액을 정한 시행령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가능)(2020두48390)

④O 합격노트 293면

행정기본법 제28조 [과징금의 기준] ① 행정청은 법령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주의 「행정기본법」 제28조제1항에 과징금 부과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므로 행정청은 직접 이 규정에 근거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X)(22지7)

② 과징금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과징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1. 부과·징수 주체
2. 부과 사유
3. 상한액
4. 가산금을 징수하려는 경우 그 사항
5. 과징금 또는 가산금 체납 시 강제징수를 하려는 경우 그 사항

답 ②

7.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A시는 관광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절차에 따라 甲 소유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하고 있는 지역 일대의 토지 및 건물들을 수용하였다. A시 시장은 甲에게 적법하게 토지의 인도와 건물의 철거 및 퇴거를 명하였으나 甲이 건물을 점유한 채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ㄱ. A시 시장의 토지인도명령에 대해 甲이 이를 불이행하더라도 그 불이행에 대해서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을 할 수 없다.
- ㄴ. 甲이 위 건물철거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A시 시장은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다.
- ㄷ. 甲이 토지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甲의 토지 인도의무는 공법상 의무에 해당하므로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기 위한 경우라 하더라도 A시 시장이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민사상 명도단행가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 ㄹ. 甲이 위력을 행사하여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대집행 행정청은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의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ㄱ, ㄴ, ㄹ
- ④ ㄴ, ㄷ, ㄹ

상

㉠O 합격노트 260면 아래 3번 판례

판례
S 토지 명도의무는 그것을 강제로 실현하면서 직접적 실행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대체적 작위의무가 아니므로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 대상X**(2004다2809)

㉡O ㉢O 합격노트 260면 2번 아래 비교판례

판례
S [건물 점유자] [1]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없음**
 [2] 건물 점유자가 철거의무자일 때에는 철거의무에 퇴거의무도 포함되어 있어 별도로 퇴거를 명하는 집행권원은 불필요
 [3]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건물철거의무의 이행을 실현할 수 있는 경우 **철거대집행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건물 점유자에 대한 퇴거조치**를 할 수 있고, 점유자가 적법한 행정대집행을 위력으로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므로, 경찰관직무집행법에 근거한 위험발생 방지조치 또는 공무집행방해죄의 범행방지 내지 현행범체포 차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2016다213916)

㉠X

판례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피수용자 등이 기업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수용대상 토지의 인도 또는 그 지장물의 명도 의무 등이 비록 공법상의 법률관계라고 하더라도, 그 권리를 피보전권리로 하는 명도단행처분은 그 권리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음(2004다2809)

답 ③

8. 신뢰보호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사건 토지 지상에 예식장 등을 건축하는 것이 관계 법령상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민원 부서로부터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된 민원 예비심사 결과를 통보받았다면, 이는 이후의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에 해당한다.
- ② 시의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에 편입한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함과 아울러 당초의 토지소유자들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 ③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하거나 의결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법률로 확정되지 아니한 이상 국가가 이해관계자들에게 위 법률안에 관련된 사항을 약속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사정만으로 어떠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④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그 결정에 관련한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중

①X 합격노트 34면 10번 판례

판례
 S [저촉 없음] 건축이 법령상 가능한지 질의하는 민원예비심사에 관련부서 의견으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저촉사항 없음’이라고 기재했다더라도, 개발부담금부과처분에 관한 공적 견해표명X(2004두46)

②O 합격노트 33면 10번 판례

<p>판례</p> <p>B 도시계획과장과 도시계획국장이 도시계획사업 준공과 동시에 사업부지 편입 토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하고 당초 토지소유자에게 환매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이를 믿고 토지를 협의매매한 토지소유자의 완충녹지 지정해제신청을 거부한 것은 신뢰보호 위반 또는 재량권 일탈·남용임(2008두6127)</p>
--

③O 합격노트 34면 17번 판례

<p>판례</p> <p>B 국회에서 일정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라도,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이상 국가가 법률안 관련사항을 약속(신뢰부여X)(2004다33469).</p>

④O 합격노트 33면 아래 1번 판례

<p>판례</p> <p>B 현재의 위험결정은 개인에 대해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 견해표명X(신뢰보호 적용X)(2002두6965).</p>

답 ①

9. 행정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 있다.
- ②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건축물 소유자의 실제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건축물대장 소관청의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 ③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이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의 근거로 내세운 규정은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이고, 이러한 규정은 공공기관이 사인과의 계약 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 ④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의 영업신고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하더라도, 그 영업신고를 한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 소정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이라면 적법한 신고를 할 수 없다.

중

①X 합격노트 293면

- 과징금부과처분이 법정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한 경우 : 과징금부과처분이 재량행위인 경우(원칙) 법원은 초과부분만 취소할 수 없고 전부를 취소해야

②O 합격노트 130면 아래 2번 판례

<p>판례</p> <p>S 건축법은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의 용도변경신청권을 부여 / 용도를 토대로 건물의 사용·수익·처분에 영향을 받으므로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신청 거부행위는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2007두7277)</p>
--

③O 합격노트 401면 28번 판례

<p>판례</p> <p>B 한국철도시설공단의 공사낙찰적격심사 감점처분은 공단 내부규정인 공사낙찰적격심사세부기준(대외적 구속력)에 의해 종합취득점수의 10/100을 감점한다는 뜻의 사법상 효력을 갖는 통지행위 ⇨ 행정처분X(2010두6700)</p>

④O 합격노트 73면 3번 판례

<p>판례</p> <p>S [무허가건물에 식당 못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은 입법목적, 규정사항 등이 달라 식품위생법상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영업) 영업신고 요건을 갖춘 자라도 당해 건축물이 건축법상 무허가건물이면 적법한 신고 못함(2008도6829)</p>

답 ①

10.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영업을 하기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그 영업을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익에 대한 손실은 영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② 토지소유자가 손실보상금의 액수를 다투고자 하는 경우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③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행정소송 제기는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
 - ④ 어떤 보상항목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잘못된 내용의 재결을 한 경우에는, 피보상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상대로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중

①O 합격노트 339면 6번 판례

<p>판례</p> <p>‘영업상 손실’은 토지·건물 수용으로 영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을 받게 됨으로 인한 직접적 손실이고, 영업을 위해 투자한 비용이나 영업으로 기대되는 이익은 보상의 근거규정이 없어 보상대상이 아님(2003두13106).</p>
--

②O 합격노트 345면

보상금 증감소송 **S**

· (수용재결에 대한 취소소송이 아니라)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의 경우, 원고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 토지수용위원회는 당사자(원고·피고)X

③O 합격노트 344면

행정소송의 제기

-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관계인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으면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B**
- 행정소송법상의 제소기간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판 B**
- 행정소송법상 제소기간보다 짧은 구 토지수용법의 제소기간 규정은 위헌X **헌**
- 집행부정지 :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당해 공익사업의 진행 및 토지수용은 정지X **B**

④X **합격노트 347면 19번 판례**

판례
A N 어떤 보상항목이 공토법상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함에도 토지수용위원회가 사실오인, 법리오해로 손실보상대상 아니라고 잘못 재결 ⇒ 피보상자는 토지수용위를 상대로 재결 취소소송 할 것X,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보상금 증감소송 해야(2018두227)

답 ④

11. 행정심판 재결의 효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의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는 것일 때에는 그 재결의 형성력이 발생하여 당해 행정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 ②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 재결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으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판결과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 ③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부처분이 재결에서 취소된 경우에 행정청은 종전 거부처분 또는 재결 후에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내세워 다시 거부처분을 할 수 없다.
- ④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중

①O **합격노트 371면 아래 1번 판례**

판례
 [1] 행정심판 재결의 내용이 처분청에게 처분 취소를 명하는 것이 아니라 재결청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는 것일 경우 재결의 형성력에 의해 당해처분은 별도의 행정처분을 기다릴 것 없이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97누17131).

②O **합격노트 149면 3번 판례**

판례
S 행정처분이나 행정심판재결이 불복기간 경과로 확정될 경우 그 확정력은,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님(2002두11288)

③X 합격노트 372면 3번 판례

판례
B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침 / 중전처분이 재결로 취소되었다고 중전 처분시와 다른 사유로 처분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X / 동일사유인지 다른 사유인지는 기본적 사실관계 동일성 여부에 따라(2003두7705).

④O 합격노트 372면 5번 판례

판례
B **N** [1]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그 결정의 적부는 결정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 / 그러나 소청심사 결정 후에 생긴 사유 아니면 소청심사 단계서 주장 안한 사유도 행정소송에서 주장O, 법원도 이에 대해 심리판단O
 [2]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은 학교법인 등에 기속력O ⇨ 결정주문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 판단(불리한 처분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 미침 ⇨ 소청심사위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처분 취소 ⇨ 행정소송 제기X 또는 기각되어 그 결정이 확정되면 결정주문과 전제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기속 ⇨ 판결이유에서 심사위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은 기속력X / 사립 교원이 불리한 처분 받아 심사청구 ⇨ 소청심사위가 처분사유 인정 안된다는 이유로 취소결정 ⇨ 그에 대해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처분사유 일부는 인정되면 법원은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해야
 [3] 소청심사위가 학교법인이 교원에 불리한 처분 한 근거인 내부규칙이 위법해 효력없다는 이유로 처분취소결정 ⇨ 학교법인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내부규칙은 적법하나 이를 위반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 소청심사위 결정의 전제가 된 이유와 판결이유 달라도 법원은 소청심사위 결정을 취소할 필요X, 청구기각O[소청심사위 결정이 유효로 확정되도 그 기속력은 당해사건에 미칠 뿐 ⇨ 학교법인은 다른 사건에서 그 내부규칙 적용가능](2017두65821)

답 ③

12.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ㄷ. 원고적격의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에는 당해 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ㄹ. 영어 과목의 2종 교과용 도서에 대하여 검정신청을 하였다가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들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의 과목과 전혀 관계가 없는 수학 과목의 교과용 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ㄴ, ㄷ
- ④ ㄷ, ㄹ

중
㉑0

판례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부분과 그렇지 아니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국한하여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2009두12785)

㉑X **합격노트 315면 22번 판례**

판례
B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주취운전자가 도로 밖으로 차량을 이동하겠다고 단속경찰관으로부터 보관중이던 차량열쇠를 반환받아 몰래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사고를 일으킨 경우, 국가배상책임 인정(주취운전 못하게 조치할 의무가 있는 단속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열쇠 교부 ⇨ 직무상 의무 위배 ⇨ 위법)(97타54482)

㉑X **합격노트 380면 2번 판례**

판례
취소소송의 원고적격 여부는 처분 상대방인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 / 여기서 법률상 이익은 처분의 근거법률(근거법규 또는 관계법규)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개별적] 구체적인 이익 / 간접적,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는 포함X(99두8565)

㉑O **합격노트 383면 9번 판례**

판례
[1] 2종 교과용도서 검정 불합격결정처분을 받은 자는 자신이 검정신청한 교과서와 관계없는 과목의 교과용도서에 대한 합격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없음
[2] 교과서검정은 고도의 학술상, 교육상 전문적 판단을 요하므로 현저히 재량을 일탈하지 않은 이상 검정은 위법X(91누6634).

답 ③

13. 행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자치사무를 수행하던 중 「도로법」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도로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개인정보 보호법」 소정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 역시 위 양벌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다.
- ③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당사자와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

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중

①X **합격노트 277면 11번 판례**

판례

S [기관위임 vs 자치] [1] 기관위임사무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기관의 일부이고,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양벌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는 법인임[형사처벌 가능 = 형벌능력O](2008도6530)

②O **합격노트 277면 14번 판례**

판례

구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는 제18조를 위반하여 이용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한 개인정보처리자를 처벌. 제74조는 법인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법인·개인의 업무에 관해 제7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는 양벌규정 ⇨ 위 양벌규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면서 그 업무를 실제 처리하는 행위자나 개인정보처리자인 법인·개인을 모두 처벌 ⇨ 위 양벌규정에 의해 개인정보처리자 아닌 행위자도 벌칙규정 적용대상이 됨 / 그러나 공공기관 중 법인격 없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면서도(제2조), 양벌규정으로 처벌되는 개인정보처리자로는 '법인 또는 개인'만 규정할 뿐,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에 양벌규정을 적용할지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법인격 없는 공공기관'을 양벌규정에 의해 처벌할 수 없고, 그 경우 행위자도 양벌규정으로 처벌 못함 (2020도1942)

③O **합격노트 280면**

판례

S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O **합격노트 279면**

- 당사자, 검사는 과태료 재판에 **즉시항고** 가능 / 이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

답 ①

14.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세무서장 A가 甲에게 과세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그러나 그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은 이미 경과하여 확정되었고, A는 甲 명의의 예금에 대한 압류처분을 하였다. 한편,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위 압류처분의 근거규정 자체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다.

- ㄱ. 甲에 대한 과세처분과 압류처분은 별개의 행정처분이므로 선행처분인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압류처분을 다룰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 ㄴ. 압류처분은 과세처분 근거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고 압류처분 관련 규정이 적용될 뿐이므로, 과세처분 근거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압류처분과는 무관하다.
- ㄷ. 과세처분 이후 조세부과의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내려진 경우,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 과세처분의 집행을 위한 압류처분을 하는 것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중

㉠X ㉡X ㉢O **합격노트 157면 1번, 2번 판례**

<p>판례</p> <p>1. S [과세 근거에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위헌으로 선언된 법률규정에 근거해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위헌결정 전에 이미 형성된 법률관계에 기한 후속처분이라도 그것이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한다면 허용할 수 없음 / 조세부과 근거가 되었던 법률규정이 위헌으로 선언된 경우, 비록 그에 기한 과세처분이 위헌결정 전에 이루어졌고, 과세처분에 대한 제소기간이 경과해 조세채권이 확정되었으며,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체납처분의 근거규정 자체에 대하여는 따로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없더라도, 위와 같은 위헌결정 이후에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한 새로운 체납처분에 착수하거나 이를 속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에 위배해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2010두10907)</p> <p>2. S [위헌결정 후 체납처분] 위헌법률에 기한 처분의 집행이나 집행력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는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어 불허 / 위헌결정 전에 이미 부담금 부과처분과 압류처분 및 이에 기한 압류등기가 이루어지고 위 각 처분이 확정되었더라도, 위헌결정 이후에는 별도의 처분인 매각처분, 분배처분 등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수 없고, 기존의 압류등기나 교부청구만으로는 타인에 의해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도 없음(2001두2959)</p>
--

답 ②

15. 공법상 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p>ㄱ.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ㄴ.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징계하고 등에서와 같이 그 징계사유에 한하여 효력 유무를 판단하여야 하거나,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p> <p>ㄷ.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의 법률행위이지만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p> <p>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가 되는 이른바 공공계약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그에 관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p>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ㄱ, ㄷ, ㄹ
- ④ ㄴ, ㄷ, ㄹ

중

㉠O 합격노트 176면

행정기본법 제27조(공법상 계약의 체결) B ① 행정청은 법령등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계약(이하 "공법상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의 목적 및 내용을 명확하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X 합격노트 176면 3번 판례

판례
A [계약직] 계약직공무원 채용계약해지의 의사표시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고 국가·지자체가 채용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행하는 의사표시이므로, 이를 징계해고와 같이 징계사유에 한해 효력 유무를 판단해야 하거나, 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해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님(2002두5948)

㉠X 합격노트 47면 14번 판례

판례
S [협의취득] 공도법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법상 법률행위이므로 당사자 간 자유의사에 따라 채무불이행책임이나 매매대금 과부족금에 대한 지급의무를 약정할 수 있음. 다만 협의취득의 배후에는 강제취득방법(수용)이 남아있어 토지소유자로서는 협의에 불응하면 바로 수용을 당한다는 심리적 강박감이 있고 협의취득과정에는 공법적 규제가 있는 등 공익적 특성을 고려해야 함(2010다91206)

㉠O 합격노트 47면 17번 판례

판례
B [1] 지방재정법에 의해 준용되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자체가 당사자가 되는 '공공계약'은 사법상 계약으로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자치·계약자유 등 사법원리가 그대로 적용
주의 현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있음(사법상 계약)

답 ②

16.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 ② 토지소유자가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에 붙은 기부채납의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증여)한 경우, 기부채납의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하여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③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④ 행정처분에 부담인 부관을 붙인 경우 부관의 무효화에 의하여 본체인 행정처분 자체의 효력에도 영향이 있게 될 수 있으며, 그 처분을 받은 사람이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법률행위 자체는 당연무효이다.

중

①O 합격노트 138면 아래 1번 판례

판례

S [기간이 문제라면]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사법상의 행위가 아니라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 ⇨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도 마찬가지 / [도시계획사업(공원조성) 시행허가를 받아 시설물을 설치하여 서울특별시에 기부한 다음 그 시설물에 대해 40년간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신청하였는데 기간을 20년으로 한 무상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사안에서] 이 사건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 기간에 대해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 못함(부적법각하) / 이 사건 허가에서 허가기간은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여서, 허가기간에 위법사유가 있다면 허가 전부가 위법(99두509)

②O 합격노트 140면 4번 판례

판례

A 기부채납 부관에 따라 토지를 국가, 지자체에 기부채납(증여) ⇨ 기부채납 부관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되지 않은 이상 토지소유자는 위 부관으로 인해 증여계약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증여계약을 취소할 수 없음(98다53134)

③O

판례

어떠한 행정행위의 부관인 부담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당해 행정청이 아닌 다른 행정청이 그 부담상의 의무이행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 이러한 행위가 당연히 또는 무조건으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 사건에서 건설부장관이 원고에게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 부관으로 당해 공유수면에 이미 토사를 투기한 피고에게 그 대가를 지급토록 한 조치에 대하여 별도의 법령상의 근거나 그 징수방법, 불복절차, 강제집행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그 수토대금의 징수는 피고가 항만준설공사를 함에 있어 투기한 토사가 원고의 매립공사에 이용됨으로써 이득을 본다는 취지에서 준설공사비용의 범위 내에서 이를 회수하려는 조치로서 그 법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가리켜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91누1264)

④X 합격노트 139면 아래 2번 판례

판례

S [부관이 무효라도 or 유효라도] 부관의 무효화로 본체인 처분 자체의 효력도 영향받을 수는 있지만, 부담의 이행으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를 한 경우 그 부관은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 내지 연유로 작용했을 뿐이므로, 법률행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그 법률행위 자체를 당연히 무효화하는 것은 아님 / 부담인 부관이 제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어 이미 불가쟁력이 생겼다면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인 경우 외에는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나, 부담의 이행으로 하게 된 사법상 매매 등 법률행위는 부담부 행정처분과는 별개의 법률행위이므로 부담의 불가쟁력과는 별도로 법률행위가 사회질서나 강행규정 위반인지 따져 그 법률행위의 유효여부를 판단해야(2006다18174)

답 ④

17. 행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청은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재량을 가진다.
- ②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 이익형량을 하였으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결정은 위법하게 될 수 있다.

- ③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된다.
- ④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장기적 개발 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입안의 지침이 되는 장기적·종합적인 개발계획으로서 직접적인 구속력이 있으므로,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했던 것보다 증가할 경우 도시기본계획의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

중

①O ②O **합격노트 180면 1번 판례**

판례

S [해침오]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나, 이러한 형성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계획에 관련되는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는 물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고량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므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안하거나**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이익형량을 했으나 **정당성, 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행정계획결정은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2005두1893)

③O **합격노트 179면 4번 판례**

판례

S [뒤어쓰기 권한] 권한 있는 행정청은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해서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나, 후행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권한을 갖지 않은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 폐지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고, 같은 지역에 대해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하자가 중대명백해 **무효**(99두11257)

④X **합격노트 179면 위 1번 판례**

판례

A [기본] 도시기본계획은 **직접적 구속력 없음** ⇨ 도시계획시설결정 대상면적이 도시기본계획에서 예정한 것보다 증가했다라도 위법은 아님(96누13927)

답 ④

18.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는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정행위로서 재량행위에 해당한다.
- ② 난민 인정에 관한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고, 법령이 정한 난민 요건과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 인정을 거부할 수는 없다.
- ③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 설립인가는 인가권자가 가지는 지도·감

독 권한의 범위 등과 아울러 설립인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기준이 정하여져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 ④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적 성질은 명령적 행정행위인 허가에 해당하며 조건으로서 부관의 부과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상

①O 합격노트 108면 6번 판례

판례

N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신규발급 시는 물론 한정면허 갱신여부 결정 시에도 관계법규 내에서 한정면허의 기준이 충족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재량 ⇨ 시·도지사가 한정면허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한 것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보이지 않는 한 그 의사는 가능한 존중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사법심사는 재량 일탈·남용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며(원칙), 사실오인, 비례·평등원칙 위반여부 등이 판단기준이 됨

행정청인 시도지사가 한정면허 갱신여부를 심사할 때 갱신 신청자가 거부처분으로 입을 불이익의 내용·정도를 전혀 비교형량하지 않거나 비교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사항을 누락한 경우 또는 비교형량을 했으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은 재량 일탈·남용(위법)(2020두34384)

②O 합격노트 106면 3번 판례

판례

N 난민인정신청 ⇨ 법령상 난민요건에 해당하는지 심사해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뿐, 이와 무관한 다른 사유만을 들어 난민인정 거부불가(2016두42913)

③O 합격노트 126면 7번 판례

판례

B 구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관리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단체인 조합 또는 협회(이하 '조합 등')의 설립인가처분은 자동차관리사업자들의 단체결성행위를 보충하여 효력을 완성시키는 처분 / 조합 등의 사업내용 등이 사업자 단체 설립의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검토해 설립인가 여부를 결정할 재량을 가짐(2013두635)

④X 합격노트 136면 7번 판례

판례

B [1]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허가를 받지 않고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것은 무효인데, 처분허가에 부관을 붙인 경우 그 처분허가의 법률적 성질이 형성적 행정행위로서의 인가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관 부과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님(2004다50044).

답 ④

19.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 ② 헌법 제107조제2항은 구체적 규범통제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구체적 사건의 심판을 위한 선결문제로서 행정입법의 위법성을 주장하여 법원에 대하여 당해 사건에 대한 적용 여부의 판단을 구할 수 있다.
- ③ 일반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효력을 갖는 법규명령의 경우에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다면 나중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었다고 하여 그때부터 유효한 법규명령이 되는 것은 아니다.

- ④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는 없다.

중

①O 합격노트 100면

행정기본법 제39조(행정법제의 개선) ① 정부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위헌으로 결정되어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O 합격노트 90면

법원에 의한 통제 1 : 구체적 규범통제(간접적 통제) S

-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 법원이 당해 법규명령의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

가) 판단 주체 및 대상

- 헌법 제107조 제2항 :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는 **각급 법원**
 - ㉡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은 법규명령을 뜻함
 - ㉢ 긴급명령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제외
 - ㉣ “규칙”은 대법원규칙, 국회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
 - ㉤ 행정규칙은 대외적 효력이 없으므로 제외 / 단 법령보충규칙은 법규적 성격을 지니므로 포함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도 법규명령이므로 구체적 규범통제 대상

나) 효력

- 법규명령이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당해사건에 한해** 그 법규명령 적용 배제
- 법규명령이 **일반적으로 효력상실X**
- 대법원판결로 당해 법규명령이 위법함이 확정된 경우 대법원은 지체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 행안부장관은 지체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해야(행정소송법)

주의 법무부장관에게 통보(X)

③X 합격노트 83면

위임명령의 근거 S

- 개별적, **구체적** 위임 없이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위임명령은 **무효**(단, 행정부 내부에서 **행정규칙으로서의 효력O**) / 입법자는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 정하면 대통령령뿐 아니라 부령에 입법사항 위임가능[부령은 총리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제정되어야 한다(X)]
- 위임명령에서 상위법령의 **구체적 조항까지 명시해야 하는 것X**
-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인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령개정으로 위임근거 부여되면 **그때부터** 유효
- 위임의 근거가 있어 유효인 위임명령도 사후에 법령개정으로 위임근거 없어진다면 **그때부터** 무효
- 따라서 어떤 법령의 위임근거 유무에 따른 유효여부를 심사하려면 **법개정의 전후에 걸쳐** 모두 심사해야

판

④O 합격노트 18면 5번 판례

판례
 [N] [1] B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만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음 ⇨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법률을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사항만 규정할 수 있을 뿐,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법률이 규정한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거나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2016두32992)

답 ③

20. 판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한다.
- ②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 ③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은 당사자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하여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기 위한 전 단계에서 공모 제안을 받아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
 ①O

판례
 마을버스 운수업자 甲이 유류사용량을 실제보다 부풀려 유가보조금을 과다 지급받은 데 대하여 관할 시장이 甲에게 부정수급기간 동안 지급된 유가보조금 전액을 회수하는 내용의 처분을 한 사안에서,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고, 위 규정을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보조금'까지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며,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환수처분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급받은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는 기속행위(2011두3388)

②O 합격노트 425면

- **법률요건분류설** 판 : 자신에게 유리한 요건사실에 대해 입증책임
 - ㉠ 처분의 적법사유 : 피고 처분청에게 입증책임 B
 - ㉡ 절차요건 : 피고 처분청에게 입증책임
 - ㉢ 재량 일탈, 남용 : 재량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입증책임
 - ㉣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원고가 처분이 무효임을 입증해야) 판 B
 - ㉤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이나, 그 구비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원고에게 입증책임

③O 합격노트 456면 9번 판례

판례

[1] B 사업주가 당연가입자가 되는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서 보험료 납부의무 부존재확인인 소는 당사자소송 (2016다221658).

④X 합격노트 410면 5번 판례

판례

A [우선협상대상자] 지자체 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근거해 기부채납 및 사용·수익허가 방식으로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전 단계에서 공모제안을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는 행위와 이미 선정된 우선협상대상자를 그 지위에서 배제하는 행위는 민간투자사업의 세부내용에 관한 협상을 거쳐 공유 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우선적으로 부여받을 수 있는 지위를 설정하거나 이미 설정한 지위를 박탈하는 조치 ⇨ 항고소송 대상(처분)(2017두31064)

답 ④